

대전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7243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1. 26.

판결 선고 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95.08㎡를 인도하고,
나, 2023. 10. 20.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2. 10. 20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95.08㎡를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, 차임은 월 50만 원, 임대차기간은 2022. 10. 20.부터 2023. 10. 19.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.

나. 피고는 2023. 10. 20. 이후 차임을 연체하였고,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제5,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원고에게 주문 기재 지하층 95.08㎡를 인도하고, 2023. 10. 20.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C에게 피고 명의를 대여하여 C가 원고로부터 위 지하층을 임차하면서 단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한 것이고 원고도 이를 알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C에게 임차인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,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위 지하층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다방을 운영하던 D로부터 피고가 다방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계좌이체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성호

별지